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1. 5. 4.] [대통령령 제31669호, 2021. 5. 4.. 제정]



국무조정실(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) 02-6744-0602

제1조(목적) 이 영은 경제,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,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, 이로 부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화을 도모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위 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화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
- 2.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이행점검,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4.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5.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
- 6.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개발,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
- 7.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·소통에 관한 사항
- 8.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-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 다.
- 1.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외교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농림 축산식품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 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국무조정실장,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
- 2.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
-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(前任)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(後任)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며,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분과위원회 등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(이하 "분과위 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,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- ③ 분과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총괄기획위원회(이하 "총괄기획 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④ 총괄기획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, 총괄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인 위원장이 된다.
- ⑤ 분과위원회 또는 총괄기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.
- ⑥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9조(국민정책참여단)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정책참여단을 둔다.
- 제10조(사무기구 등)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.
- ② 사무기구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국무2차장이 된다.
- ③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제11조(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우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·단체·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 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워,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.
- 제12조(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·공공단체,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·세미나 개최, 설문조사,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- 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·분과위원회·총괄기획위원회·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, 국민정책참여단 참여자, 관계 전 문가 또는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- 제14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, 분과위원회, 총괄기획위원회, 분야별 전문위원회, 국민정책 참여단과 사무기구 등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31669호, 2021, 5, 4,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